

보이코트와 거래거절에 관한 미국 법원의 판례

서헌제 / 중앙대 법대 교수

판례의 동향

보이코트와 거래거절(boycotts and refusal to deal)은 수직적 결합, 배타적 거래 및 끼워팔기와 더불어 배타적인 관행(exclusionary practices)의 하나로 다루어진다. 보이코트는 대부분 어떤 집단이 저항하고 싶은 일정한 관행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행해진다. 이러한 보이코트는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이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트러스트법의 관심사가 된다.

Fashion Originators' Guild of America, Inc. , v. Federal Trade Commission(1941)판결

반경쟁적관행의 강제를 위해 보이코트를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최초의 연방대법원판결이었던 이 사안에서 법원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된 보이코트는 서면법, 클레이튼법 및 FTC법상 약탈적인 거래관행(predatory)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Lorain Journal Co. v. United States(1951)판결

이 판결은 일정 지역의 뉴스 및 광고 보급에 있어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한 신문발행업자의 거래거절에 관련된 사안이었다. 이 신문사는 경쟁 라디오사에 광고를 의뢰한 자의 지역광고 인수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독점법위반으로 제소되었다. 법원은 이 신문사가 경쟁을 파괴하기 위하여 자기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이 거래거절은 노골적인(naked) 거래제한으로서 서면법 제2조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Klor's, Inc. v. Broadway-Hale Stores, Inc.(1959)판결

이 판결은 고도로 경쟁적인 시장에서 극히 일부분의 사업자에게만 영향을 주고 따라서 그러한 보이코트가 없다고 하더라도 경쟁의 증대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는 보이코트의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법원은 비록 이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독점법위반으로 허용될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하여는 보이코트가 경쟁의 전체적 상황이나 소비자에게 유리한 혜택을 주는지 여부를 고려하였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Aspen Skiing Co. v. Aspen Highlands Skiing Corp. (1985)판결

이 판결에서는 보이코트로부터 소비자에 대한 유리한 효과가 생기는 여부가 핵심적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즉, 법원은 어떠한 판매형태는 시간이 흐르면서 소비자들에게 효율적이고 유리할 수도 있는 반면 독점력을 가

진 기업의 갑작스런 거래거절은 최적의 판매망을 방해하고 소비자 복지를 감소시킬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어떠한 거래형태가 경쟁자들에 대해 명백한 약탈적 효과를 가지지 않는 경우라 할 지라도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 유해한 효과를 갖는다면 배타적 관행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흥미를 끄는 또하나의 쟁점사항은 법원이 거래거절의 과거를 명함에 있어 독점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하여금 경쟁자와 공동으로 마케팅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었다.

Federal Trade Commission v. Indiana Federation of Dentists(1986)판결

사실관계

- 1) 1970년대 이래 치과요료를 취급하는 보험회사들은 보험가입자들이 치과 의사들로 하여금 환자 개인의 수요에 알맞는 가장 저렴하고도 적절한 치료를 함으로써 의료보험료를 절감해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치과 의사들의 보험금청구(치료비청구)를 보다 정밀하게 평가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들은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이나 또는 그후에 치과 의사들이 내린 진단서 기타 환자에 대한 상담내용을 평가하기로 하였다. 보험회사들은 이러한 평가를 위하여 치과 의사들의 보험금지급청구서에 진단과 치료상의 권고사항에 관련된 정보 뿐 아니라 환자를 검사하는 데 사용한 치아 X-레이 사진도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보험금청구서와 이에 첨부되는 X-레이 사진은 X-레이 검사원들의 검토를 거치게 되며 만일 제시된 자료로부터 판단할 때 의사가 권고한 치료가 실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과다치료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보다 자세한 정밀조사를 위하여 치과 의사면허를 가진 치과전문가(dental consultants)에게 그 타당성을 검토하게 하였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과다한 치료비를 감액하고 나아가 환자에게 가장 저렴하고 경제적인 치료를 유도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 2) 보험회사들의 진단과 치료결정에 대한 이러한 평가제도는 치과 의사들에게 그들의 직업적 독립과 경제적 복지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이리하여 1970년대 초 인디애나주 치과 의사의 85%로 구성된 직업단체인 인디애나 치과 의사협회(Indiana Dental Association)는 보험금청구서에 X-레이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회원에게 협조를 구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조치에 대항하였다. 이러한 협회의 노력은 큰 성과를 거두어 상당수의 치과 의사들이 이 서약에 서명함으로써 인디애나주의 보험회사들은 X-레이 제출요구를 관철시키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치료에 대한 평가제도를 계속 시행하기 위하여는 보험회사 직원들이 치료를 담당할 치과 의사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면담을 하여야 하지만 이는 매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었다.
- 3)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치과 의사협회는 FTC로부터 X-레이 제출을 금지시킨 조치가 독금법위반이기 때문에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을 받고 그 제출여부를 개별 치과 의사의 자유의사에 맡기도록 하는 데 동의하였다. 그러나 이에 불만을 품은 치과 의사들이 별도로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 Indiana Federation of Dentists(IFD)를 설립하여 보험회사들의 X-레이 제출요구를 계속하여 차단하기로 하고 이를 내용으로 하는 운영규칙(work rule)을 제정하였다. 비록 IFD의 회원은 100명도 채 안되는 인원으로서 규모는 작았지만, 회원들은 인디애나주의 세 지역, 즉 Anderson, Lafayette 및 Fort Wayne과 그 주변에 고도로 밀집되어 있었다. IFD는 Anderson 지역에서 활동하는 치과전문의들 중 거의 100%와 Lafayette 및 그 주위에 있는 치과 의사들의 약 67%를 서명에 참여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이리하여 IFD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

에서 IFD는 보험회사에게 X-레이의 제출을 거부하는 데 성공하였다.

FTC의 결정

1) 1978년에 이르러 연방거래위원회(FTC)는 IFD이 회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의 X-레이 제출요구에 응하지 못하도록 조치가 FTC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불공정한 경쟁방법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한 심사에 착수하였다. 심사결과 FTC는 IFD의 조치가 서면법상의 위법한 거래제한으로서 공모(conspiracy)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FTC는 IFD가 치과보험회사의 X-레이 요구에 대한 협력을 저지하기 위해 인디애나 치과 의사협회 및 IFD의 회원들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즉, 그러한 제한조치가 없었더라면, 환자를 획득하기 위한 치과의사들간의 경쟁은 환자가 속한 보험회사들과의 거래에 있어서 X-레이 제출여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IFD의 회원세력이 강한 해당 지역에서 IFD의 조치는 치과의사들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보험회사로 하여금 평가에 필요한 X-레이에 대한 접근을 막는 현실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FTC는 IFD가 보험회사에 X-레이의 제출을 거절하기 위해 치과의사들을 조직화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령을 하였다.

2) FTC법 제5조

- (a) 거래에 있어서 또는 거래에 영향을 끼치는 불공정한 경쟁방법 및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은 위법이다.
- (b) 위원회는 은행, 거래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육운회사, 1958년 민간항공법의 적용을 받는 항공회사 및 외국항공회사를 제외한 자·파트너쉽 또는 회사, 그리고 파트너쉽 또는 회사로서 1921년 개정 통조림업 및 가축장법 제406조제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통상에 있어서 또는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한 경쟁방법 및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을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할 권한을 갖는다.
- (c) 위원회는 개인, 파트너쉽 또는 주식회사가 거래에 있어서 또는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한 경쟁방법 또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을 사용해 왔거나 또는 현재 사용하고 있다고 믿을만한 사유가 있고 이것을 심판절차에 부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제된 사실내용을 기재하고 송달 후 30일 이후 정해지는 심판기일 및 장소를 부기한 심판개시결정서를 행위자, 파트너쉽 또는 회사에 송달하여야 한다. 심판개시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자, 파트너쉽 또는 회사는 정하여진 장소 및 시간에 출두하여 위원회가 동 결정서에서 인정한 범위반행위의 금지를 요구하는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사유를 입증할 권리가 있다.

항소법원의 판결

1) IFD은 제7 순회항소법원(7th Circuit)에 FTC의 명령에 대한 사법심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항소법원은 위원회의 명령이 실질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항소법원은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한 사실관계의 입증여부를 검토하였다. 첫째, IFD의 회원들이 보험금청구를 평가하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들이 요구한 X-레이 제출을 저지하기 위한 공모를 하였는가, 둘째, 그러한 공모가 보험회사의 요구에 대하여 공동으로 치과의사들간의 경쟁을 억압하는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점이다. 항소법원은 첫번째 사실과 관련하여 IFD가 존재하는 주된 이유중의

하나가 이른바 보험청구서식과 관련하여 X-레이의 제출을 금지하는 운영규칙의 공포와 시행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 2) 경쟁을 실질적으로 억제하였다는 두번째 사실에 대하여는 항소법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첫째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IFD의 제한이 없었다면 치과의사들이 X-레이 제출에 있어 서로 경쟁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입증되지 못하였다. 둘째, 비록 그러한 제한이 없었더라도 치과의사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X-레이를 제출하였을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보험회사들이 X-레이 제출 이외에 직접 치과의사들은 방문하여 면담하는 방법으로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봉쇄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IFD의 제한조치는 경쟁에 해를 미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연방대법원의 판결

- 1) 항소법원과는 달리 연방대법원은 IFD소속 의사들의 공모로 인하여 경쟁제한적 효과가 발생하였다는 FTC의 사실인정이 소송기록상 적절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법원은 치과의사들중에서 IFD 소속 회원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지역(즉, Anderson과 Lafatette 인근지역)에서 보험회사들은 X-레이 제출요구에 대한 승낙을 얻어낼 수 없었기 때문에 보험금지급 여부의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는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다른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이러한 IFD의 집단적 행위로 인해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보다 비싼 방법으로 얻거나 아니면 이를 포기하도록 하는 양자택일이 강요되었으며 따라서 보험회사의 요구에 대한 협력과 관련한 치과의사들간의 경쟁은 제한되었다고 보았다.
- 2) 그러나 이러한 사실인정이 법적인 측면에서 서면법 제1조 위반을 입증하기에 충분한지의 여부, 즉 보험회사들이 X-레이의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한 협력을 동 IFD가 집단적으로 거절한 것이 “불합리한” 거래제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연방대법원의 선례에 따르면, 어떠한 거래제한(restraints of trade)은 “당연위법”(per se illegal)의 범주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합리성의 원칙(rule of reason)” 범주에 해당하면 불법으로 금지된다. 합리성의 원칙이 적용될 경우에는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한 기준은 거래제한이 부분적으로는 경쟁을 규제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거래제한이 궁극적으로 경쟁을 억제하거나 나아가 거래자체를 파괴하는 것인지에 달려 있다.
- 3) 제3자인 보험회사와 회원간의 거래에 관하여 IFD가 취한 제한조치는 “집단적 보이코트(collective boycott)”로 불려지는 관행과 유사하다. 즉, 그러한 제한은 치과보험에 의해 보장되는 환자들과 특별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에 대하여 공동으로 거절한 것이다. 그런데 종래 연방대법원이 집단 보이코트에 대해 당연위법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Klor's, Inc. v. Broadway-Hale Stores, Inc. 판결 이래 확립된 선례이지만 법원은 이 사안에 대하여 당연위법원칙 대신 합리성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 4) IFD의 제한은 개업치과의사들간에 고객이 원하는 특정한 서비스, 즉 보험회사에 X-레이를 송부하는 서비스를 억제하기 위한 수평적 협정의 형태를 띠고 있다.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패키지서비스에 관하여 경쟁하지 않기로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는 가격획정이 아니지만,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한계비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담보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시장의 능력을 저해하기 때문에 가격조건에 관한 경쟁제한조치와 다를 바 없다. 즉, 시장의 기능이나 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효율성 증진과 같은 상쇄적인 경쟁촉진적 이익이 없는 한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교환거래’를 저해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내용의 협정은 합리성의 원칙에 의하더라도 유지될 수 없다.

- 5) IFD는 경쟁상의 이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X-레이 제공을 억제하는 IFD의 행위가 부당한 거래제한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의 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로, IFD의 거래제한이 문제된 시장의 정의와 당해 시장에서 IFD 회원들의 시장지배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된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IFD가 부당하게 거래를 제한하였다는 FTC의 판단은 법률적으로는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률문제로서 시장지배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 노골적인 가격 또는 생산량제한을 정당화 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즉, 치과서비스시장이 상대적으로 지역적이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IFD의 치과의사들이 지배력을 갖고 있는 지역에 대한 상세한 시장분석 없이도 경쟁에 미치는 유해한 효과를 인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6) 둘째로, IFD는 X-레이 제출을 제한하는 IFD의 조치가 불합리한 거래제한을 구성한다는 FTC의 결정은, 그러한 제한으로 말미암아 환자와 보험회사들이 X-레이를 평가할 수 있었다라면 선택하였을 서비스보다 더 비용이 드는 치과서비스의 제공을 가져왔다는 점을 위원회가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X-레이의 제출을 요구함에 있어 보험회사가 추구하는 목표가 치과치료에 있어서 보험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목표가 실제상 선택된 방법을 통하여 실현 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치과의사들이 요구된 정보의 제공을 집단적으로 거절함으로써 그 성과를 방해하려고 시도한 행위가 불합리한 거래제한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는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즉, 특정한 구매가 비용상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목적으로 소비자가 요구한 정보를 제한하려는 집단적인 행동은 시장에 의한 가격결정 메카니즘의 원활한 작용을 방해하기에 충분하며, 따라서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없을 때보다 더 높은 가격이나 높은 가격의 서비스를 초래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을 때에도 규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 7) 셋째로, IFD는 FTC가 합리성의 원칙을 분석함에 있어 경쟁과 무관한 “치료의 질”(quality of care)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즉, IFD측은 회원에게 X-레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게 한 것은 질적으로 수준 높은 치과치료를 위한 법적, 도덕적 및 윤리적인 근거를 가진 조치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의 전제는 IFD의 조치가 환자와 보험회사들이 선택한 치과서비스의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정당성이 없다고 배척하였다. IFD의 주장에 따르면, 만일 소비자들이 치료의 선택에 있어 중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자유스러울 경우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현명치 못거나 심지어는 위험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은 서면법의 기본정책에 대한 정면적인 공격과 다를 바 없다고 보았다. 나아가 정보의 제공이 다른 시장에서보다 유독 치과서비스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유해할 것이라고 믿을만한 특별한 이유도 전혀 없다고 하였다. 어느 수준의 서비스가 적당한지를 결정해야 하는 보험회사들은 치료 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니지만 치료비용의 최소화 및 환자의 복지를 고려할 인센티브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보험회사들은 환자를 대신하여 집단보험(group insurance coverage)계약을 체결하는 노조나 경영자들의 후원을 얻기 위하여 서로 경쟁하고 있으며, 잠재적인 고객들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손해를 전보해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손해전보가 고객의 치과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적절하도록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 8) 대법원은 X-레이 제공을 제한하는 IFD의 조치에 관한 FTC의 사실인정은 적절한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으며, 그러한 사실관계는 법률적으로도 서면법 제1조 및 FTC법 제5조의 요건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연방대법원은 FTC가 IFD의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내린 금지명령(cease-and-desist order)이 부당하다는 항소법원의 취소판결을 파기하고 위원회의 명령을 유지하도록 판결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심결사례

1998. 2. 27.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주)장백건설의 부당한 광고행위 (9710부사1437)</p>	<p>(주)장백건설은 1995. 10. 6.부터 12. 27.까지의 기간 동안 경상일보 등 일간지와 광고전단을 통해 자기가 건축·임대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의 「장백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임대광고를 하면서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산정시에는 국민주택기금 용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고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월 40,000원인 국민주택기금의 이자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임대료를 산정하여 “월 임대료 55,000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함으로써 마치 자신이 임대하는 아파트의 월 임대료에 대해 실제보다 훨씬 저렴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하였으며, 동 임대아파트 입주 후 8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입주와 동시에 입주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45인승 버스 2대를 노포동 지하철역까지 운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함으로써 마치 입주 즉시 셔틀버스가 운행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의 광고행위를 하여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6호 위반</p>	<p>㉠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건과 관련하여 이미 광고한 1개 지방일간지(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주)삼보컴퓨터의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 (9711유거1561)</p>	<p>(주)삼보컴퓨터는 1997. 11. 1.부터 11. 26.까지의 기간동안 자사의 신제품인 「(데스크탑) 삼보 드림시스 61 “체인지업” 컴퓨터」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판매촉진을 위한 경품행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신이 제공 가능한 적법한 소비자현상경품류 가액한도인 150,000원을 초과하여 경품류를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구매한 고객 12명에게 1인당 800,000원 상당의 4박 5일간의 미국여행권을 제공하는 등 적법한 소비자현상경품류의 가액한도를 초과한 경품을 제공하였으며, 적법한 소비자현상경품류의 제공기간은 1회당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제공기간을 6일 초과한 26일동안 경품행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한 소비자경품류의 가액한도 및 제공기간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제2항 위반</p>	<p>㉠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심결사례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강릉대 치과병원 시행 유니트케어 외 1종 입찰참가 3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9711공동1596) ((주)신흥, 인일정공, 효창치재)	(주)신흥은 1997. 10. 17. 강릉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실시한 유니트케어 75세트 등 치과용 의료용구와 관련한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서 「인일정공」 등 경쟁사업자와의 사전합의를 통해 자신이 유리한 조건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자신을 수주예정업체로 결정한 후 동 합의내용의 이행을 위해 입찰에 앞서 투찰금액에 관한 정보를 경쟁사업자에게 통지해 주거나 또는 경쟁사업자로부터 통지받는 등의 치과용의료용구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1조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공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 과징금 납부 (주)신흥 : 7,267천원

1998. 3. 11.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사) 한국영상음반유통협회 부산지부의 거래거절 강요행위 (9707경축1297)	(사) 한국영상음반유통협회 부산지부는 1997. 8. 28. 자신의 사무실에서 국내 비디오테이프 판매시장에서 약 66%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주)우일영상 등 4개 비디오테이프 판매업자들의 부산소재 영업소장과 비디오테이프 도매상 및 자신의 임원들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주)빅뱅에 대한 일괄공급을 중단하고 (주)빅뱅의 체인점들에게도 타 대역업자들과 동일하게 해당지역의 영업사원이 직접 공급할 것으로 요구하는 등 자신의 구성사업자와 거래하는 비디오테이프 판매사업자들로 하여금 특정사업자에 대한 일괄공급을 거부하도록 강요하는 등 부산지역 비디오테이프 대역시장에서의 비디오테이프 유통 및 가격결정 등에 대한 자유로운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4호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거절 강요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자신의 구성사업자와 거래하는 모든 비디오테이프 판매사업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
한국담배인삼공사의 타사업자 사업활동방해행위 (9712독점1698)	한국담배인삼공사는 1994년 이후 시장점유율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는 마일드세븐 등 외국산담배로 인한 담배시장의 점유율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독립된 사업자로써 제품의 판매여부에 대해서는 담배소매인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지배적사업자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1995년 8월부터 1997년 10월까지의 기간동안 담배소매인들이 판매하는 외국산담배를 국산담배로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3조의2제1항제3호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사업자 사업활동방해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4단×15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심결사례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16개 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 (9802공동0103) ((주)조흥은행, (주)한국산업은행, (주)제일은행, (주)한일은행, (주)서울은행, (주)한국외환은행, (주)신한은행, (주)보람은행, (주)한미은행, (주)하나은행, (주)동남은행, (주)부산은행, (주)충청은행, (주)광주은행, (주)강원은행, (주)충북은행)	(주)조흥은행 등 16개 은행은 1997. 12. 16.부터 일일 환율변동폭 제한이 폐지되고 이로 인해 환율변동에 따른 환위험 예측이 곤란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신환매매수수료율을 일제히 종전의 2%에서 5%로 동일하게 인상 조정하는 등 외환매매수수료율의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여 대고객 소액외환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1호 위반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 과징금 부과 ((주)조흥은행, (주)한국산업은행, (주)제일은행, (주)한일은행, (주)서울은행, (주)한국외환은행, (주)신한은행, (주)보람은행, (주)한미은행, (주)하나은행, (주)동남은행 : 각 5,000만원 (주)부산은행, (주)충청은행, (주)광주은행, (주)강원은행, (주)충북은행 : 각 3,000만원)

1998. 3. 19.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롯데쇼핑(주)의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 (9712유거1646)	롯데쇼핑(주)는 1997. 11. 7.부터 11.16.까지 10일 동안 「창립 18주년기념 사은대잔치」 행사를 하면서 50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자에게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소비자경품류 가액한도가 1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는 269,000원 상당의 디지털 핸드폰 69,439대를 상품판매와 부수하여 경품으로 제공하는 등 자신의 고객에게 적법한 소비자경품류 가액한도를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 위반	◎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2개 중앙일간지(전판)에 4단×15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캠프체인사업부(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9801유거0075)	캠프체인사업부(주)는 동양맥주(주)와 「OB캠프」 맥주가맹점의 상표권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조선일보 등을 통하여 1997. 3. 4.부터 5. 31.까지 89일동안 동 「OB캠프」 맥주가맹점 모집을 위한 홍보의 일환으로 「OB캠프 새봄맞이 사은대잔치」를 실시하면서 자신의 「OB캠프」 맥주가맹점에 비치된 응모권으로 응모한 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당첨된 「OB캠프」 맥주가맹점 이용자에 대하여 경품류가액한도인 15만원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누비라 승용차, 매직프로 586컴퓨터, 싸이판 여행권 등을 제공하는 등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심결사례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OB캐프」 맥주가맹점 매출을 늘려 향후 동 맥주가맹점을 영위하고자 하는 고객으로 하여금 자신이 제공하는 실내장식을 하면 마치 원활한 가맹점 운영이 보장되는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 전단 위반	
(주)보성의 거래강제행위 (9712구사1678)	(주)보성은 1997. 11. 26. 입주여건이 좋지 않아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남은 자사의 미분양아파트 2,075세대 중 494세대를 대구·경북지방에 거주하는 여직원을 제외한 자사의 전직원들에게 직원들의 아파트 구입의사의 유무를 불문하고 추첨을 통하여 1인당 1세대씩 일방적으로 배정한 후, 추첨배정자들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사실상 납부할 수 없는 실정임을 알고 11. 28.~29. 추첨배정자 전원에게 분양계약을 하도록 통보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직원에 대해서는 판촉비로 1인당 500만원(24평이하)~700만원(33평이상)을 지급하여 계약금에 충당하도록 하였고, 세대당 5천만원의 중도금은 대동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신이 분양하는 아파트 중 미분양아파트를 자신의 직원들에게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거래강제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 위반	◎ 거래강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대구·경북지방 종합일간지(전판)에 4단×15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1998. 3. 20.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음반거래질서정상화협회의 재판매가격유지강요행위 (9711공동1637)	음반거래질서정상화협회의회는 음반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제작사 및 도매상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7. 9. 22. 제1차 이사회에서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음반물 제작사와 도매상에 대하여 당초 한국영상음반협회와 전국음반도매상협회간에 작성된 재판매가격유지계약서의 제7조에 따라 음반물 공급 및 판매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동 합의사실을 9. 24.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하였으며, 1997. 10. 2. 제2차 이사회에서 재판매가격유지의 시행과 관련하여 표준가격을 출고가에 대비하여 제작사는 60%, 도매상은 70%, 소매업자는 100%를 기본으로 각각 시행하기로 결의한 후 동 결의사실을 10. 6.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하는 등 자신의 구성사업자들에게 음반물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강요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4호 위반	◎ 재판매가격유지강요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